

##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 2014. 10. 29. 지침 제 4호

일부개정 2025. 12. 4. 지침 제 4-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 이하 같음)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의료중재원의 각 부서의 장 또는 감사지원부서의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장 및 감사(행동강령책임관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

② 원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① 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직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에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타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무적 고발대상 및 미고발자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닉한 경우

② 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38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의 시기)** 원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고발의 절차)** 고발은 원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고발처리상황 관리)** 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한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5. 12. 4.>

이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